

대통령령 제 호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4 다목과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부실징후기업

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8조에 따른 공동관리절차 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주채권은행의 관리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종료한 기업 중 공사가 경영정상화를 위해 자금대여 또는 지급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의4(특수목적법인을 통한 자금대여·지급보증의 대상·방식·범위) 법 제26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특수목적법인을 통한 자금대여 및 지급보증의 대상·방식·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8조의4(특수목적법인을 통한 자금대여·지급보증의 대상·방식·범위) ----- ----- ----- -----
가. ~ 나. (생략)	가. ~ 나. (현행과 같음)
<u><신설></u>	<u>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부실징후기업</u> <u>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8조에 따른 공동관리절차 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주채권은행의 관리절차를 진행중이거나 종료한 기업 중 공사가 경영정상화를 위해 자금대여 또는 지급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u>